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72057, 2016가합578687(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구상금청구의 반소(반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2009515(본소), 2018나200952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7205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중 2017. 11. 15.부터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1,230,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5,714,718/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189,789/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5,283,241/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284,480/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833,905/13,920,000,000 지분에 관하여,

바.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833,905/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2. 7.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4,664,015/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153,785/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4,701,513/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274,952/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774,230/13,920,000,000 지분에 관하여,

바.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774,230/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1. 2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은 53,645,739원, 피고(반소원고) C은 53,324,2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9. 27.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23,688,612원 및 그 중 22,113,275원에 대한 2017. 9. 27.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8. 제4,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6,183,130/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412,221/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6,283,138/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418,675/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7,143,288/13,920,000,000 지분에 관하여1),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7,143,288/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4,664,015/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310,934/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4,701,513/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391,405/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975,776/13,920,000,000 지분에 관하여2),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6,975,776/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53,655,337원, 피고(반소원고) C은 53,324,208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은 각 25,835,8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7.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1,230,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D은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피고 B, 소외 F을 두었고, E은 1997. 10. 25. 사망하였으며, D은 2015. 3. 2. 사망하였다(이하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소유 부분,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재산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중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증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금전채권 등과 위 증여의 대상이 된 현금 중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핀다.

$$\begin{aligned} \text{유류분 부족액} &= \text{유류분액}[\text{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times \text{당해 유류분} \\ &\quad \text{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text{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quad - \text{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text{A} &= \text{적극적 상속재산(유증액 포함)} + \text{증여액} - \text{상속채무액} \\ \text{B} &= \text{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text{C} &= \text{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text{수유액} \\ \text{D} &= \text{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text{상속채무 부담액} \end{aligned}$$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갑 제3, 4, 5, 6, 7, 8, 17호증, 을 제1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2016. 4. 5.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5. 3. 2.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내역	가액 (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4,395,300,000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89,600,000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4,566,460,000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76,640,000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0/116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480,000,000
6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0/116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480,000,000
7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211,780,500
8	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314,015,590
9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00,027,533
10	남서울신협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0,532
11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0,054
12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0,563
13	우체국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420
14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공제금채권	3,750,000
15	서울 강남구 H아파트 704호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30,000,000
합계		11,247,605,192

2) 증여액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 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 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2010년을 기준수치인 100으로 보고 산정한 수치이다)를 사용함이 상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상속개시 당시 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 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증여

원고는, 피고 B은 2010. 5.부터 2015. 2.까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서울 서초구 I 지상 건물 제108, 109호)에서 'J'를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였는바, 망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료로서 총 202,690,37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104,656,903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98,033,473원(= 202,690,376원 - 104,656,903원)의 임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2010. 5.부터 2010. 8.까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 B이 2010. 9.부터 2015. 2.까지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의 임료는 2010. 10.부터 2013. 12.까지는 월 3,652,054원, 2014. 1.부터 2015. 2.까지는 월 3,000,000원인 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9.의 임료 역시 2010. 10.부터 2013. 12.까지의 임료와 같은 월 3,652,054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이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총 임료는 188,082,160원[=146,082,160원 (= 월 3,652,054원 x 2010. 9.부터 2013. 12.까지 40개월) +

42,000,000원(= 월 3,000,000원 x 2014. 1.부터 2015. 2.까지 14개월))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4,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0. 9.부터 2015. 2.까지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료로서 총 104,656,90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83,425,257원(= 188,082,160원 - 104,656,903원)의 임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그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모자관계에 있는 망인과 피고 B이 119여회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 B은 망인에게 총 325,683,381원을 입금하였고, 망인은 피고 B에게 총 173,198,600원을 입금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위 임료 83,425,275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104,656,903원 이외에 피고 B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다른 금원들이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료로서 지급된 것으로 불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증여

을 제1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C에게 2007. 2. 9. 현금 63,3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7년 1분기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90.286이고, 2015년 1분기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107.04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증여액 63,300,000원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5,046,319원(= 63,300,000 원 x 107.040/90.28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라) 소외 F에 대한 증여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소외 F에게 2015. 2. 9. 5,000,000원, 2015. 2. 10.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는 모두 2015년 1분기로서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일치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소외 F에 대한 증여액은 그대로 10,000,000원이다.

마) 소결론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할 증여액은 168,471,576원(= 피고 B 83,425,257원 + 피고 C 75,046,319원 + 소외 F 10,000,000원)이다.

3) 상속채무액

을 제16 내지 19,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2016. 4. 5.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5. 3. 2.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등 소극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내역	가액 (원)
1	신한은행대출금채무	1,000,000,000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60,000,000
3	K에 대한 금전채무	77,000,000
4	카드대금(현대백화점)	1,173,232
5	카드대금(신한카드)	1,726,532
6	병원 치료비	1,008,650
7	핸드폰 요금	20,040
8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20,735,631
9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2,148,996
1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300
11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261,630
합계		1,366,691,011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묘에 대한 금전채무 77,000,000원(순번 3)은 K가 2015. 1. 18. 망인에게 잠시 맡겨둔 금원으로서 당연히 K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당시 77,000,000원을 도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정할 때 공제해야 하는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1,812,367,130원을 전액 납부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 2172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시은 10,049,385,757원(= 적극적 상속재산 11,247,605,192원 + 승여재산 168,471,576원 - 상속채무액 1,366,691,011원)이다.

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 원고의 유류분액(A×B)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그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액은 1,256,173,219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0,049,385,757 원 × 1/4 × 1/2)이다.

2) 원고의 특별수익액(C) 및 순상속분액(D)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혹은 특정 유증인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통상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은 없고, 이 사건 유증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모든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하는 내용의 포괄적 유증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0원이다.

3)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A×B) - C - D]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원고의 유류분액과 같은 1,256,173,219원이다.

마.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방법

1) 피고들의 각 유류분초과액 및 유류분반환의무

피고들의 유류분액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1,256,173,219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0,049,385,757원 $\times$ 1/4 $\times$ 1/2)인바, 피고 B의 특별수익액은 망인으로부터 임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83,425,257원과 이 사건 유증으로 받은 5,623,802,596원(= 11,247,605,192원 $\times$ 1/2)을 합한 5,707,227,853원이고, 피고 C의 특별수익액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75,046,319원과 이 사건 유증으로 받은 5,623,802,596원을 합한 5,698,848,915원이며, 소외 F의 특별수익액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원이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에 따라 망인의 소극재산도 각 1/2씩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들이 상속받은 채무액은 각 683,345,505원(= 1,366,691,011원 $\times$ 1/2)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피고들의 각 유류분초과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피고 B	피고 C	소외 F
유류분액(㉑)	1,256,173,219	1,256,173,219	1,256,173,219
수유액(㉒)	5,623,802,596	5,623,802,596	0
수증액(㉓)	83,425,257	75,046,319	10,000,000

특별수익액(㉔=㉒+㉓)	5,707,227,853	5,698,848,915	10,000,000
상속채무부담액(㉕)	683,345,505	683,345,505	0
순 이익액(㉖=㉔-㉕)	5,023,882,348	5,015,503,410	10,000,000
유류분초과액(㉗=㉔-㉑)	3,767,709,129	3,759,330,191	-1,246,173,219

이처럼 피고들의 각 유류분초과액(피고 B은 3,767,709,129원, 피고 C은 3,759,330,191원)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256,173,21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각 부담액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부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각 부담액을 계산하면, 피고들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바, 이때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액은 피고들 각 자의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므로, 피고 B은 $3,767,709,129/7,527,039,320(= 3,767,709,129 + 3,759,330,191)$, 피고 C은 $3,759,330,191/7,527,039,320$ 의 비율로 정하여진다. 결국 피고 B의 부담액은 $628,785,781\text{원}(= 1,256,173,219\text{원} \times 3,767,709,129/7,527,039,320)$, 피고 C의 부담액은 $627,387,437\text{원}(= 1,256,173,219\text{원} \times 3,759,330,191/7,527,039,320)$ 이다.

3) 피고들의 유류분반환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지분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 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의 유류분반환방법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과 이 사건 금전채권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수유재산	가액(원)	피고 B(원)	피고 C(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4,395,300,000	245,714,718	245,168,278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89,600,000	16,189,789	16,153,785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4,566,460,000	255,283,241	254,715,522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76,640,000	4,284,480	4,274,952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0/1160 지분 및 제6항 기재 부동산	480,000,000	26,833,905	26,774,230
6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0/1160 지분 및 제7항 기재 부동산	480,000,000	26,833,905	26,774,230
7	이 사건 금전채권 등	959,605,192	53,645,739	53,526,437
합계 ³⁾		11,247,605,192	628,785,777	627,387,434

3)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5,714,718/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189,789/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5,283,241/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284,480/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833,905/13,920,000,000$ 지분(= $40/1160$ 지분 $\times$ $26,833,905/480,000,000$)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833,905/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인 2015. 12. 7.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53,645,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45,168,278/4,395,300,000 지분 중 원고가 구하는 244,664,015/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153,785/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254,715,522/4,566,460,000 지분 중 원고가 구하는 254,701,513/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274,952/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774,230/13,920,000,000 지분(= 40/1160 지분 x 26,774,230/480,000,000)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774,230/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인 2015. 11. 2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53,526,437원 중 원고가 구하는 53,324,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반환 받게 될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소급하여 원고가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임대수익 중 원고의 유류분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본소 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1,230,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자신들의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존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 또는 갱신될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불이행 사유가 존속하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증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서 이 사건 소장의 최종 송달일인 2015. 12. 7.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7. 10.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1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임대 수익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갑 제19, 2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2016. 10. 19.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2. 7.부터 2017. 9. 30.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료의 합계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을 제16호증(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를 근거로 위 임료 합계액이 455,058,6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상당수가 그 계약기간이 2017. 9. 30.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2015. 12. 7.부터 2017. 9. 30.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별 임료(원)	합계(원)
----	-------------------------	-------

	제2항(L)	제4항(M)	제6, 7항(I)	
2015. 12. 7. ~ 31.	7,826,283	4,435,484	1,209,677	13,471,444
2016. 1.	9,704,591	5,500,000	1,500,000	16,704,591
2016. 2.	9,704,591	5,500,000	1,500,000	16,704,591
2016. 3.	9,704,591	5,500,000	1,500,000	16,704,591
2016. 4.	9,704,591	5,500,000	1,500,000	16,704,591
2016. 5.	11,330,397	5,500,000	1,500,000	18,330,397
2016. 6.	12,104,591	5,500,000	1,500,000	19,104,591
2016. 7.	12,104,591	5,500,000	1,500,000	19,104,591
2016. 8.	12,104,591	0	1,500,000	13,604,591
2016. 9.	12,104,591	0	1,500,000	13,604,591
2016. 10.	12,104,591	0	1,500,000	13,604,591
2016. 11.	13,504,591	6,000,000	1,500,000	21,004,591
2016. 12.	13,504,591	6,000,000	1,500,000	21,004,591
2017. 1.	13,504,591	6,000,000	1,500,000	21,004,591
2017. 2.	13,504,591	6,000,000	1,500,000	21,004,591
2017. 3.	13,504,591	6,000,000	1,500,000	21,004,591
2017. 4.	11,027,258	6,000,000	1,500,000	18,527,258
2017. 5.	10,366,849	6,000,000	1,500,000	17,866,849
2017. 6.	11,734,591	6,000,000	1,500,000	19,234,591
2017. 7.	11,734,591	6,000,000	1,500,000	19,234,591
2017. 8.	11,734,591	6,000,000	1,500,000	19,234,591
2017. 9.	11,734,591	6,000,000	1,500,000	19,234,591
합계(원)	254,353,425	108,935,484	32,709,677	395,998,586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총 임료 및 관리비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 관리 및 보존하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순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얻는 이득액은 그 건물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들인 비용을 위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12. 7.부터 2017. 9. 30.까지의 임료에 상당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각 부동산별 총 임료액에 원고의 유류분(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하는 지분을 합한 것)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부동산(건물)	총 임료액(원)	원고의 유류분	부당이득액(원)
별지 목록 제2항	254,353,425	32,343,574/289,600,000	28,407,109
별지 목록 제4항	108,935,484	8,559,432/76,640,000	12,166,308
별지 목록 제6, 7항	32,709,677	53,608,135/480,000,000	3,653,134
합계			44,226,551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나(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액의 각 1/2씩을 분할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각 22,113,275원(= 44,226,551원 x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14. 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임료액은 2017. 6.부터 2017. 9.까지의 월 임료액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 10. 1.부터 2017. 11. 14. 까지의 임료에 상당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의 부당이득으로서 각 1,575,337원(= 3,150,674원 x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건물)	기간	임료액(원)	원고의 유류분	부당이득액(원)
별지 목록 제2항	2017. 10.	11,734,591		
	2017. 11. 1 ~ 14	5,476,142		
	합계	17,210,733	32,343,574/289,600,000	1,922,156
별지 목록 제4항	2017. 10.	6,000,000		
	2017. 11. 1 ~ 14	2,800,000		
	합계	8,800,000	8,559,432/76,640,000	982,815
별지 목록 제6, 7항	2017. 10.	1,500,000		
	2017. 11. 1 ~ 14	700,000		
	합계	2,200,000	53,608,135/480,000,000	245,703
합계				3,150,674

마.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23,688,612원(= 22,113,275 원 + 1,575,337원) 및 그 중 22,113,2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에 대한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 피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15. 8. 31. 망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74,680,505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망인의 조세 등 채무 29,670,972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유증과 관계없이 자신의 유류분 비율(1/8) 만큼은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위 변제로 인하여 위 채무를 면책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대출금채무 1,000,000,000원의 1/8인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의 다음 날인 2015.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74,680,505원의 1/8인 9,335,063원을, 피고들에게 위 조세 등 채무 29,670,972원의 1/8인 3,708,871원을 각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이와 같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유류 분반환채권과 상계하고, 피고 C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구상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 사건 반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증의 공정증서에 '사망 당시 존재하는 망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수증자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유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유증은 망인의 소극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피고들이 1/2씩 나누어 유증받는 내용의 포괄적 유증으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증에 따라 망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조세 등 채무는 모두 피고들이 각 1/2씩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 채무를 유류분 비율만큼 상속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청구 및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중 장래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김진희 판사 장민주

별지

1. 서울 강남구 L 대 241.5㎡

2. 서울 강남구 L

[도로명주소] 서울 강남구 N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위 아스팔트싱글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20㎡

2층 120㎡

3층 120㎡

4층 120㎡

5층 87.20㎡

지층 156.80㎡

층별용도 : 지층 점포 1층 점포 95.16㎡

주차장 24.84㎡

2층-5층 사무실

3. 서울 서초구 M 대 374.3㎡

4. 서울 서초구 M

[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O

벽돌조 스라브 단층 다가구 주택(3가구)

지층 64.80㎡

1층 112.50㎡

층별내역

지하층: 2가구

1층: 1가구

5. 서울 서초구 I 대 945㎡

6. 서울 서초구 I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4동 점포사무실 대중음식점 의원 및 미장원 및 이용원 1동

1층 436.37㎡

2층 442.58㎡

3층 455.84㎡

4층 455.84㎡

옥탑 43.4㎡

지하실 317.82㎡

내역 지하층 대중음식점 및 기계실 1층 점포

2층 대중음식점 사무실 미장원 미용원

3층 의원 및 사무실 4층 사무실

내 1층 제108호

(점포) 건평 27.37㎡

옥탑 0.53㎡

기계실 0.43㎡

7. 서울 서초구 I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4동 점포사무실 대중음식점 의원 및 미장원 및 이용원 1동

1층 436.37㎡

2층 442.58㎡

3층 455.84㎡

4층 455.84㎡

옥탑 43.4㎡

지하실 317.82㎡

내역 지하층 대중음식점 및 기계실 1층 점포

2층 대중음식점 사무실 미장원 미용원

3층 의원 및 사무실 4층 사무실

내 1층 제109호

(점포) 건평 27.37㎡

옥탑 0.53㎡

기계실 0.43㎡. 끝.

1)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한 지분 $40/1160 \times 27,143,288/480,000,000 = 27,143,288/13,920,000,000$

2)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한 지분 $40/1160 \times 26,975,776/480,000,000 = 26,976,776/13,920,000,000$

3)피고별 안분액의 합계액은 계산 과정에서의 원 미만 버림으로 인하여 위 2)항에서 산정한 피고들의 각 분담액(피고 B 628,785,781원, 피고 C 627,387,437원)보다 4원 또는 3원이 적다.